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191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0531	문대림의원	2024.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3.)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5.)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0914	윤준병의원	2024.6.25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1290	김한규의원	2024.7.2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	2201576	여기구의원	2024.7.10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2201922	이개호의원	2024.7.18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2924	전종덕의원	2024.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9. 24.)-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3.)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5.)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5.)에서 위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9.30.)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필수농자재 가격 및 농업에너지비용이 국내외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 등으로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경영비 부담 증가는 개별 농업경영체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이에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 나. 비료, 사료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을 필수농자재로,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에너지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 단계 별 위기대응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필수농자재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수농자재 품목,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지원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의 범위 내에서 농

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거나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산정한 필수농자재 가격이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제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필수농자재 실태에 관한 조사 및 통계자료의 작성, 필수농자재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등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망 위험”이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망 위험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자재”란 농업에 사용되는 소모성 투입재를 말한다.
4. “필수농자재”란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주요 농자재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 나.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
5. “농업용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중 다

음 각 목의 에너지를 말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나.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

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농사용 전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가 필수농자재 및 농업용에너지(이하 “필수농자재등”이라 한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5조(위기대응지침의 작성·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망 위

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이하 “위기대응지침”이

라 한다)을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위기대응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에 대한 대비 및 대응 계획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필수농자재 및 그 원자재(필수농자재 생산 원료가 되는 자재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필수농자재의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 및 비축 등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말한다)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필수농자재등 제조·판매업자 와의 역할분담 체계

6. 그 밖에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필수농자재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위기대응지침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④ 위기대응지침의 작성·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 ①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1. 필수농자재 품목

2. 제7조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지원비율

3. 그 밖에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필수농자재등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의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격 중 필수농자재 가격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 인을 통하여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산정한 제품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검증 결과를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가격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품목별·경영규모별 지원상한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기준을 정할 때에는 공급망 위험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률 및 농가구입가격지수(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활동에 투입된 품목의 가격지수를 말한다) 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의 제품(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물품 중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 지배적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남용행위로 필수농자재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제품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필수농자재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제품
 3.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산정한 필수농자재 가격이 제1항에 따른 가격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제품
 4.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별 제조·판매가격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농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지급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주요 농작물·임산물(「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임산물생산업 품목을 말한다) 재배지 또는 주요 가축사육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신청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경영체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그 동의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경영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기대응지침의 작성·운용과 제7조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국별 필수농자재의 원자재 수입가격 및 수입물량, 필수농자재 제품별 판매가격과 판매가격 산정근거 및 판매물량,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별 재고물량, 농업경영체별 필수농자재등 구입가격 및 구입물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필수농자재 등 제조·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수농자재등 제조·판매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동행할 수 있으며, 조사 시작 전에 조사 대상 필수농자재등 제조·판매업자에게 동행하는 자의 신분과 참여 목적을 고지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고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등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범위·절차, 제5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대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② 제1항에 따른 우대지원 품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이용에 대한 융자·보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자금의 융자·보조
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설비 투자자금의 융자·보조

제13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 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

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필수농자재등 지원 상황 점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원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환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중복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

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 중 영업비밀 또는 농업경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